



# 보 건 복 지 부



수신 수신자 참조  
(경유)

제목 「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안내」 수정 배포

## 1. 관련

- 가. 의료인력정책과-2095(2026.5.18.) (수신: 32개 의과대학)
- 나. 의료인력정책과-2096(2026.5.18.) (수신: 교육부)
- 다. 의료인력정책과-2108(2026.5.19.) (수신: 16개 시도)

2.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3. 우리부는 「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및 하위법령의 시행에 따라, 2027학년도부터 시행되는 지역의사선발전형의 지원 자격, 학비 지원, 의무복무 등 주요 사항을 안내하기 위하여 「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안내」 책자를 제작·배포한 바 있습니다.

- 다만, 안내책자 p.2 하단 표의 설명 과정에서 일부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관련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정본을 재배포하오니, 수정본으로 재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< 수정사항 >

#### 가. 수정 대상

- 안내책자 p.2 하단 「중·고교 소재지별 지원 가능 의과대학 및 2027학년도 선발인원」 표

#### 나. 수정 취지

- 해당 표는 "의과대학 소재지 기준 중학교 요건을 충족한 경우"를 전제로, 고등학교 이수 경로에 따른 진료권 선발 및 광역권 선발 지원 가능 여부를 설명하기 위한 표임

#### 다. 관련 법령 해석

- 「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3항 및 별표 2에 따라 중학교 소재지 요건은 광역권 기준으로 적용
- 따라서 동일 도(道) 내 다른 진료권으로 전학한 경우 또는 동일 광역권 내 다른 시·도로 전학한 경우에도 중학교 요건은 충족 가능하며, 광역권 선발 지원이 가능

#### 라. 정정 내용

- 해당 표는 "의과대학 소재지 기준 중학교 소재지 및 거주 요건 충족을 가정"함을 명시
- "중·고교 모두 동일 진료권 내 이수" 요건은 "경기·인천"만 해당하여, 해당 셀(A2) 수정

